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자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교원 자격을 제한〉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6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위험결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개정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5.

다. 회 부 일 : 2024.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범죄자”라 함)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 5. (생략) <u><신설></u> 6.·7.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략) <u><신설></u>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현행	개정안
7. (생략)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7. (현행과 같음)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6조제5호의2 또는 제17조제2항제6호의2·제7호-- ----- -----.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²⁾에 따른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³⁾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4)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24.10. 기준 259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7	11	11	7	8	259

자료: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상태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4. 6.)	259개 등록 (‘24. 10.)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별도 규정 없음
	수업료	자율로 정함	운영위 심의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②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결격사유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③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교육기관 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상실된 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으며, ②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③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관한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음.

< 현행 결격사유 비교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교육공무원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제17조(교원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교육공무원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개정안은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②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자를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사 입법례로는,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의 설립·운영자⁶⁾, 아이돌보미⁷⁾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⁸⁾의 결격사유에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⁹⁾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 ②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자를 추가할 것인지는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제1항¹⁰⁾이 직업선택의 자유¹¹⁾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는바¹²⁾,

그 이유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됨을 판시하였음¹³⁾.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10) 舊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1)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2)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13) 위헌 결정에 따른 개정 전후의 아동복지법 조문은 참고자료 ‘위헌결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개정’ 참조.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기간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개정안이 종래의 위헌결정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18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해 다른 죄목과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 죄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각 범죄별 형벌을 구체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격 및 취업 제한이 부당하게 넓게 적용되는 가능성을 방지하며,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벌금형에 한정하여 자격 및 취업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도임.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아동복지법」 규정 위헌결정 사례를 고려할 때, 모든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¹⁴⁾과 관계없이 대안교육기관 설

1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립·운영 및 교원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와 학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이나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2,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내용대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반영되어 2024년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위헌결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개정

□ 개정 요지 : ①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사안별로 달리 결정하여 판결로 취업제한명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②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u>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u>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u>일정기간</u>(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u>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u>(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u>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u>(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u>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각 호 생략)